



의정소식



이 천 시 의 회

발 간 사



존

경하는 시민 여러분!

민주주의 꽃이라 일컬어지는 지방자치가 시작된지도 벌써 6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이천시 의회의 의정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성원과 관심, 그리고 아낌없는 격려에, 의원 모두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천시 의회 제2대 제2기의 의정활동을 마감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의원 모두는 진정한 민주주의 정착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 이천시 의회는 시민의 생활 속에서 항상 호흡을 같이하고, 시민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므로써, 시민의 삶의 질과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금번 이 책자의 발간을 통해 이천시 의회 제2대 제2기의 의정활동을 시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고, 그 동안의 성과를 되돌아 보면서 새로운 발전의 도약을 위한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천시 의회는 17만 이천시민의 지방자치에 대한 뜨거운 열망과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공개의정·투명의정 또한 열린의회로서 참다운 지방자치문화를 꽃피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정소식지를 통해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더욱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소원성취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997년 8월 9일

이천시의회의회장 최 운 학

목 차

| | |
|-------------------|----|
| ● 의회연혁 | 1 |
| ● 의회조직 | 2 |
| ● 역대 의장단 | 3 |
| ● 의회구성 | 4 |
| ● 의원현황 | 5 |
| ● 의회운영현황 | 7 |
| ● 주요의정활동 | 15 |
| ● 결의문 및 건의문 채택 | 23 |
| ● 제9회 정기회 시정질의 답변 | 27 |
| ● 사진으로 본 의정 활동 | 45 |
| ● 지방의회가 하는 일 | 59 |

의 회 연 혁

- 1991년 3월 26일 제1대 이천군의회 의원선거(의원 13명)
- 1991년 4월 15일 제1대 이천군의회 개원
- 1994년 3월 4일 설성면 선거구 보궐선거(의원 1명)
- 1995년 6월 27일 제2대 이천군의회 의원선거(의원 14명)
- 1995년 7월 1일 제2대 이천군의회 개원
- 1996년 3월 1일 제1대 이천시의회 개원
 - 경기도 파주시등 5개 도·농 복합 형태의 시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4994호로 이천군이 시로 승격됨에 따라, 동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원 14명이 시의원으로 신분승계
- 1997년 3월 20일 모가면 선거구 보궐선거(의원 1명)

의 회 조 직

의 장 : 최 운 학

부 의 장 : 이 무 영

사 무 국 장 : 조 남 철

| 상 임 위 원 회 | | | |
|-----------|-------|-------|-------|
| 구 분 | 의회운영 | 내 무 | 산 업 |
| 위원장 | 강 신 원 | 박 용 선 | 이 종 철 |
| 간 사 | 박 용 선 | 이 종 룰 | 강 기 필 |
| 위 원 | 강 기 필 | 강 신 원 | 국 희 영 |
| 위 원 | 박 병 진 | 심 흥 택 | 박 병 진 |
| 위 원 | 박 선 기 | 이 근 제 | 박 선 기 |
| 위 원 | 이 상 복 | 이 상 복 | 윤 희 동 |
| 위 원 | | | 이 무 영 |

| 전 문 위 원 | |
|---------|-------|
| 의회운영 | 김 만 식 |
| 내 무 | 안 봉 환 |
| 산 업 | 김 태 신 |

의 정 계 장
최 병 옥

의 사 계 장
원 경 희

직 원 : 6 명

직 원 : 6 명

역 대 의 장 단

이천군의의회

- 제1대 제1기 ('91. 4. 5~'93. 4. 14)
의 장 : 유 광 수
부의장 : 박 완 구
- 제1대 제 2 기 ('93. 4. 15~'95. 4. 14)
의 장 : 박 완 구
부의장 : 심 흥 택
- 상임 위원장 ('94. 10. 11~'95. 6. 30)
의회운영 위원장 : 임 진 혁
내 무 위원장 : 김 문 식
산 업 위원장 : 국 희 영
- 제1대 제 3 기 ('95. 4. 15~'95. 6. 30)
의 장 : 유 광 수
부의장 : 박 선 기
- 제 2 대 제1기 ('95. 7. 1~'96. 2. 29)
의 장 : 국 희 영
부의장 : 박 선 기
의회운영 위원장 : 이 종 철
내 무 위원장 : 박 병 진
산 업 위원장 : 이 상 복

이천시의의회

- 제 2 대 제 2 기 ('96. 3. 1~'97. 8. 31)
의 장 : 최 운 학
부의장 : 이 무 영
의회운영 위원장 : 강 신 원
내 무 위원장 : 박 용 선
산 업 위원장 : 이 종 철

의 회 구 성

■ 의원현황

- 정 수 : 14인 [읍·면 : 11인
동 : 3인

■ 연 령 별

| 연 령 별 | 계 | 30~39 | 40~49 | 50~59 | 60세이상 |
|-------|----|-------|-------|-------|-------|
| 인 원 | 14 | 1 | 2 | 7 | 4 |

■ 직 업 별

| 직 업 별 | 계 | 상 업 | 농 업 | 사 업 | 기 타 |
|-------|----|-----|-----|-----|-----|
| 인 원 | 14 | 3 | 2 | 8 | 1 |

■ 원 구 성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산업위원회)

■ 상임위원회

| 위 원 회 명 | 위원정수 | 현 원 | 관 할 부 서 |
|-----------|------|-----|-------------------------------------|
| 의회운영위원회 | 6 | 6 | 의회운영, 의회사무국 |
| 내 무 위 원 회 | 6 | 6 |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국, 보건소, 시립도서관 |
| 산 업 위 원 회 | 7 | 7 | 복지환경국, 건설도시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농촌지도소 |

■ 의회사무국 정·현원

| 구 분 | 계 | 행정 4급 국장 | 행정 별정 5급 | 행정 6급 | 행정 7급 | 행정 8급 | 행정 9급 | 기능 8 등급 | 기능 9 등급 | 기능 10 등급 |
|-----|----|----------|----------|-------|-------|-------|-------|---------|---------|----------|
| 정원 | 18 | 1 | 2 | 3 | 2 | 2 | 0 | 1 | 4 | 3 |
| 현원 | 18 | 1 | 2 | 3 | 1 | 2 | 1 | 2 | 3 | 3 |

이천시의회 의원 현황

| | | | |
|---|---|--|---|
|  | <p>의 장</p> <p>최 운 학 (창전,중리,관고동) 이천시 중리동 229 자) 635-3121 사) 637-5500</p> |  | <p>부 의 장</p> <p>이 무 영 (부 발 읍) 부발읍 무촌리 221 자) 32-5006 사) 32-5007</p> |
|  | <p>의회운영위원장</p> <p>강 신 원 (대 월 면) 대월면 사동리 349-4 자) 636-1661 사) 636-8944</p> |  | <p>내 무 위 원 장</p> <p>박 용 선 (호 법 면) 호법면 동산리 254-2 자) 32-9594</p> |
|  | <p>산 업 위 원 장</p> <p>이 종 철 (창전·중리·관고동) 이천시 창전동 169-1 자) 635-2325 사) 636-7461</p> |  | <p>의 원</p> <p>강 기 필 (장호원읍) 장호원읍 장호원리 44-5 자) 641-2273 사) 641-2273</p> |
|  | <p>의 원</p> <p>이 종 룰 (부 발 읍) 부발읍 신하리 369 자) 636-6127 사) 635-9120</p> |  | <p>의 원</p> <p>박 선 기 (신 둔 면) 신둔면 장동리 452 자) 32-7174 사) 635-5068</p> |

| | | | |
|---|---|--|---|
|  | <p>의 원</p> <p>국 희 영 (백 사 면) 백사면 현방리 67-14 자)32-4567 사)32-0627</p> |  | <p>의 원</p> <p>이 상 복 (마 장 면) 마장면 오천리 46-6 자)32-2131 사)32-6530</p> |
|  | <p>의 원</p> <p>이 근 제 (모 가 면) 모가면 진가리 100-1 자)34-2348</p> |  | <p>의 원</p> <p>윤 희 동 (설 성 면) 설성면 제요리 647 자)641-8503 사)641-0303</p> |
|  | <p>의 원</p> <p>박 병 진 (울 면) 울면 고당리 211 자)641-8045 사)641-8641</p> |  | <p>의 원</p> <p>심 흥 택 (창전,중리,관고동) 이천시 안흥동 353 자)635-0174</p> |

의회 운영현황

('96. 3. 1 ~ '97. 7. 31)

■ 회의 개최현황

- 정기회 : 1 회 34 일
- 임시회 : 13 회 74 일

■ 의안 종류별 처리현황

| 구분 종류별 | 처 리 | 처 리 내 역 | | | | | 미 처리 | 비 고 |
|-----------|-----|---------|-----|-----|-----|-----|------|-----|
| | | 가 결 | | 부 결 | 폐 기 | 철 회 | | |
| | | 원 안 | 수 정 | | | | | |
| 합 계 | 245 | 227 | 15 | 3 | - | - | - | |
| 조례안 | 201 | 193 | 6 | 2 | - | - | - | |
| 예산안 | 12 | 7 | 5 | - | - | - | - | |
| 동의안 | 7 | 5 | 1 | 1 | - | - | - | |
| 승인안 | 1 | 1 | - | - | - | - | - | |
| 기 타 | 24 | 21 | 3 | - | - | - | - | |

회기별 의안 처리현황(제1회 ~ 제4회)

| 회기별 | 기 간 | 부 의 안 건 | 처 리 결 과 |
|----------------|--------------------------------------|--|--|
| 제 1 회 (임시회) | '96. 3. 1. (1일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장단 선거 • 이천시조례 제정안 (이천시의회 공인조례외 139 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 장 : 최운학 부의장 : 이무영 • 원안가결 |
| 제 2 회 (임시회) | '96. 3. 16. ~'96. 3. 18. (3일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6년도 세입세출 제 1 회 추가경정예산안 • 이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 례중 개정조례안 • 면·동간 행정구역 조정 동의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동의 |
| 제 3 회 (임시회) | '96. 4. 22. ~'96. 4. 23. (2일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 례중 개정조례안 •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이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 례중 개정조례안 • 이천시 통·리장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이천시 읍·면출장소 조례 폐지조례안 • 이천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 이천시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 제 4 회 (임시회) | '96. 5. 29. ~'96. 5. 30. (2일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에 관한질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회기로 연기 |

회기별 의안 처리현황(제 5 회)

| 회기별 | 기 간 | 부 의 안 건 | 처 리 결 과 |
|----------------|--------------------------------------|--|--|
| 제 5 회 (임시회) | '96. 6. 20. ~'96. 7. 1. (12일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에 관한질문 • '96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 2회 추가 경정 예산안 • '96년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 1회 추가 경정 예산안 • '96년 지방채발행 변경계획 동의안 • '9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 이천시 해외명예 국제협력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이천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 이천시 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이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 • 이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 • 이천시 지역의료보험 지원을 위한 조례안 • 이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 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영조례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석규, 박병진 박선기, 심흥택 이종률, 이종철 의원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동의 • 부 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회기별 의안 처리현황(제 6 회 ~ 제 7 회)

| 회기별 | 기 간 | 부 의 안 건 | 처 리 결 과 |
|----------------|--|--|---|
| 제 6 회 (임시회) | '96. 8. 26. ~'96. 9. 6. (12일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사무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위원회 구성 |
| 제 7 회 (임시회) | '96. 10. 22. ~'96. 10. 30. (9일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5년 일반및특별회계 결산승인안 • '96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 3 회 추가 경정 예산안 • 이천시 지방제정운영상황의 주민공개에 관한 조례안 • 이천시 고문번호사조례 개정조례안 • 이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 이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 이천시 위생매립장관리소 설치조례안 •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 이천시 통·리장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 이천시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 이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 • 이천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 이천시 수방단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 이천시 하수도 사용조례안 • 이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안 • 이천시 진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조례안 • 이천시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등 설치제한 조례안 • 이천시 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 기준 조례안 • 이천시 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동의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부 결 • 부 결 • 원안가결 • 계 류 (제 13 회 상정)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회기별 의안 처리현황(제 8 회 ~ 제 9 회)

| 회기별 | 기 간 | 부 의 안 건 | 처 리 결 과 |
|----------------|---|---|--|
| 제 8 회 (임시회) | '96. 11. 12. ~'96. 11. 16. (5일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안가결 |
| 제 9 회 (정기회) | '96. 11. 25. ~'96. 12. 28. (34일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6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동의안 • '97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 • '9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 '97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95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이천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 • 이천시 체육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 이천시 시립도서관 설치조례안 • 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 • 이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 이천시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 • '96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 • '9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일부수정가결 • 일부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회기별 의안 처리현황(제 10 회 ~ 제 12 회)

| 회기별 | 기 간 | 부 의 안 건 | 처 리 결 과 |
|-----------------|--------------------------------------|--|--|
| 제 10 회 (임시회) | '97. 1. 29. ~'97. 1. 31. (3일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 이천시 통·리장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 이천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 • 이천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 이천도시계획 재정비안 • 진암지구도시계획시설 변경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의 견 서 • 의 견 서 |
| 제 11 회 (임시회) | '97. 3. 11. ~'97. 3. 15. (5일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7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 1 회 추가 경정 예산안 • 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 이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 이천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 • '9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조치법 제정반대 결의문 및 건의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수정의결 • 일부수정의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일부수정가결 • 원안채택 |
| 제 12 회 (임시회) | '97. 3. 25. (1일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순환철도 건설에 대한 건의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안가결 |

회기별 의안 처리현황(제 14 회)

| 회기별 | 기 간 | 부 의 안 건 | 처 리 결 과 |
|-----------------|--------------------------------------|--|--|
| 제 14 회 (임시회) | '97. 6. 24. ~'97. 7. 7. (14일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목건설공사 및 수해대책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 '97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 2 회 추가 경정 예산안 • '97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 1 회 추가 경정예산안 • '97년 지방채발행 변경계획안 • '9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결산검사위원 선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안가결 • 일부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일부수정가결 • 원안가결 |

주요 의정활동

('96. 3. 1 ~ '97. 7. 31)

■ 타 시 · 군의회 방문 : 3 회

타 시 · 군의회 비교방문을 통해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시책개발 및 지역 활성화 도모

- 거제시 의회 : '96. 4. 24~4. 25
- 가평군 의회 : '96. 5. 31
- 나주시 의회 : '96. 11. 6

■ 읍 · 면순회 의정보고회 개최 : 1 회

1년동안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보고하고 각종 불편사항들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

- 기 간 : '96. 7. 9~7. 29
- 대 상 : 이천시 장호원을 외 8개 읍 · 면
- 참석인원 : 기관단체장, 리장, 부녀회장 등 824명
- 건의사항 : 79건(예산사업 35건, 비예산사업 44건)

■ 간담회 개최 : 3 회

시민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천시의회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의견을 교환하여 의정에 반영하고자 함.

- 제 1 회 ('97. 2. 25)
초청자 : 기관 단체장(18명)
- 제 2 회 ('97. 3. 25)
초청자 : 각읍 · 면 · 동 리장 및 통장협의회회장(13명)
- 제 3 회 ('97. 5. 29)
초청자 : 각읍 · 면 ·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및 부녀회장(26명)

■ 행정사무감사

1. '96 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요

가. 목 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이천시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추진이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타당성 있는 대안 및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정계획 수립 및 추진이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나. 기 간 : '96. 11. 26 ~ '96. 12. 2 (7일간)

다. 감사대상기관 : 이천시청, 사업소 및 읍·면·동

라. 감사반 편성

| 위원회명 | 감 사 반 | 감 사 대 상 기 관 | 비 고 |
|--------------|---|---|-----|
| 의회 운영 위원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 장 : 강신원 • 반 원 박용선, 강기필, 박병진 박선기, 이상복 | 의회사무국 | |
| 내 무 위원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 장 : 김석규 • 반 원 이종률, 강신원, 박용선 심흥택, 이상복 |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국, 보건소 읍·면·동(해당업무분야) | |
| 산 업 위원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 장 : 이종철 • 반 원 강기필, 국희영, 박병진 윤희동, 이무영 | 복지환경국, 건설도시국 농촌지도소,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읍·면·동(해당업무분야) | |

다. 감사자료 제출요구 건수 : 254 건

2. 행정사무감사 실시 현황

가. 부서별 감사결과

| 구분 위원회별 | 관련부서 | 합계 | 시정 및 처리사항 | 건의사항 | 비고 |
|-------------|----------|----|--------------|------|-----------|
| 합계 | | 39 | 29 | 10 | |
| 의회운영 위원회 | 소계 | - | - | - | |
| | 의회사무국 | - | - | - | |
| 내무 위원회 | 소계 | 17 | 12 | 5 | |
| | 기획감사담당관실 | 1 | 1 | - | |
| | 문화공보담당관실 | 2 | 2 | - | |
| | 총무국 | 14 | 9 | 5 | |
| 산업 위원회 | 소계 | 22 | 17 | 5 | |
| | 복지환경국 | 9 | 7 | 2 | 환경사업소 포함 |
| | 건설도시국 | 8 | 7 | 1 | 상수도사업소 포함 |
| | 농촌지도소 | 1 | - | 1 | |
| | 읍·면·동 | 4 | 3 | 1 | 해당업무분야 |

나. 감사결과 및 처리사항

• 내무위원회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 | 비고 |
|-------------------------|---|----|
| 중·장·단기 지방재정 계획 심의 미흡 | '96. 12. 3 중기재정계획 심의회를 개최·심의후 의결한 바 있음 | |
| 공보기자재 관리대장 미비치 | 공보기자재에 대한 물품관리대장은 기히 비치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보기자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 | 비 고 |
|----------------------------|--|-----|
|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초과지급 |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추후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직원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음. | |
| 공유재산관리 소홀로 인한 지방세(임대료) 미부과 | 공유재산은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바, 미임대 14필지 19,621㎡에 대하여 마장면에서 '96. 12. 12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징수 중임. | |
| 공무원 직급별 정원배치 부적정 | '97.1.8일 승진인사를 실시하였으나 승진 최저년수 도래자가 없어 승진이 불가한 실정으로 향후 승진소요연수 도래자는 우선 승진 임용하겠음. | |
| 위원회 운영 활성화 | 현재 위원회는 39개 49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2개 위원회 153회를 개최하였음(7개 위원회 미개최) 앞으로는 관련전문가등 외부인사와 여성위원 위촉을 확대하고 유사기능 위원회 통·폐합을 통한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겠음. | |
| 시청 주차공간 부족으로 민원인 불편 초래 | '97.4월경 완공을 앞둔 중리동 113-2번지의 주차장(108면)이 완공되면 직원 전용 주차시설로 활용하고 차량등록 업무를 이전하면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됨. | |
| 공무원 복리후생비 지급 부담 |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쓰여진 복리후생비는 예산서에 부기된 금액한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를 이행치 못하였음. 향후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부기된 금액내에서 집행하도록 시정해 나가겠음. | |
| 농지전용 허가 불이행 | '96. 12. 9 마장면 농지심의회 의뢰 '96. 12. 17 농지심의 완료 '96. 12. 20 농지전용 허가 의뢰(농정과) | |
| 공무원 연찬회 참석으로 감사지장 초래 | 공무원 연찬회를 2회에 걸쳐 실시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지연되었고, 월동기를 피하여 일정을 정하다 보니 행정사무 감사기간과 중복이 되었음.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음. | |
| 지방세 징수 소홀 | '95년도 결산이월액 : 7,722백만원 '96. 12. 15일 현재 징수액 : 4,838 백만원 '96. 12. 15일 현재 체납액 : 2,884 백만원 |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 | 비 고 |
|--|---|-----|
| | <p>징수율 : 62.6%</p> <p>체납액 10만원이상 모든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자 관리카드 작성 관리.</p> <p>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은행 연합회에 신용불량 거래자로 등록시켜 금융대출을 제한토록 할 것이며, 고질체납자는 형사 고발을 하는등 공평합리 세정구현과 체납액 정리에 더욱더 노력을 할 것임.</p> | |
| <p>기획감사담당관실 경영 수익계 신설</p> | <p>세무과 세외수입계에서 전담토록 하여 경영수익에 철저를 기하겠음.</p> | |
| <p>기능직(청소원)채용 건의</p> | <p>'96년 제2회 기능직 공채 실시로 기능직(조무) 임용자원이 확보된 상태로 조속한 시일내 총원하겠음.</p> | |
| <p>지방세징수 전담요원 배치</p> | <p>늘어나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주부사원을 모집 체납액 징수 전담 요원으로 활용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p> | |
| <p>회계별 (예금)효율적 관리</p> | <p>현재 세출예산 집행을 위한 자금배정에 있어서는 월별 자금수급 계획과 세출예산 집행계획에 의거 실시하고 있음.</p> <p>세입과 세출의 시기상 차액으로 발생하는 유휴자금에 대하여는 자금수급 상황을 판단, 장·중·단기 고금리 상품으로 예치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p> | |
| <p>주민봉사 행정미흡. 이천시 창전동 인구 35,000명에 직원이 22명으로 대민 행정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직제를 개편하여 계를 신설하거나 주임제를 시행하여 책임행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건의.</p> | <p>'97 상반기 3월 1일 이후 조직 진단시 타당성 검토 반영하겠음.</p> | |

• 산업위원회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 | 비 고 |
|--------------------------|--|-----|
| 공장등록 허가처리 철저 | 약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장용지에 축분 왕겨등 원료 아적금지 조치 - 조치일 : '95. 3. 8. - 생산공정중 약취방지대책 수립후 계획서 제출지시 - 지시일 : '96. 11. 28. - 공장측 약취방지대책 계획 · 분뇨 투입시 효소 및 쌀겨 투입량 현행 : 1일 20 kg, 개선 : 1일 100 kg · 왕겨분쇄 및 왕겨훈탄 투입 현행 : 왕겨분쇄 투입 개선 : 왕겨 및 왕겨훈탄 투입 | |
| 가스안전검사에 따른 과태료 미납액 징수 철저 | 미납금액 : 660,000 원 징수금액 : 630,000 원 미징수금액 : 30,000 원 '97. 1. 17일까지 징수 완료계획 | |
| 어린이 놀이터 보수비 미 집행 | '96.12.12 사업비 1,914천원 집행완료 | |
| 이천의료원 장례예식장 단속철저 | 이천의료원 장례예식장에 대하여 영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 지시 : '97. 1. 8 이후 불법부당 영업행위에 대하여 지속적 지도·단속 계획임. | |
| 쓰레기 처리 철저 |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현지 출장하여 처리기계를 사용하는 방법, 응급처치사항 및 운영관리 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교육하고, 아파트 주민 모두가 음식물 처리기계 사용에 관심을 갖도록 홍보. 13개 읍·면·동에 쓰레기 단속반을 편성, 규격봉투 미사용, 불법투기자를 적발하여 관급 규격봉투 사용에 전 시민이 동참하도록 지도 감독 홍보 실시. | |
| 불법농지 전용 단속 소홀 (야쿠르트 공장) | '96. 8. 28 원상복구 명령 '96. 10. 15 원상복구 완료 |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 | 비 고 |
|-----------------------|--|-----|
| 차고지 관리 철저 | <p>차고지 일제조사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97. 2. 1 ~ 2. 28 - 대상 : 90개 업체 - 주요점검 내용 : 등록기준 적합여부, 등록내역과 실제운영실태 일치여부, 법규준수 이행여부 <p>점검반원 : 교통행정계장외 4명</p> <p>지적사항 조치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보완등 개선명령 : '97. 4. 30 한 - 명령 불이행업체 등록취소등 : '97. 6. 30 한 | |
| 하자보수공사 철저(죽당 지구 경지정리) | <p>'97. 3. 10 : 하자보수 대상 전수조사</p> <p>'97. 3. 11 : 하자보수 지시</p> <p>'97. 3. 12 ~ 4. 15 : 하자보수 완료계획</p> | |
| 도로포장공사 조기 착공 | <p>신둔면 마교리 ~ 용면리간 도로 확 · 포장공사 완료 :</p> <p>'96. 12. 31</p> | |
| 공사시 주민통행 불편 해소 | <p>군도 1호선 : '96. 12. 31 보조기층 완료로 주민 통행 원활</p> <p>군도 3호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말3리 진입부분 가각부 정리관계로 '96.12.20 일부 정비 완료하고 진출 부분은 '97년 군도 3호선 확 · 포장공사 시행시 설계에 반영 정비토록 하겠음. 우다교 연결도로 건설에 있어서는 '97년 본예산에 200,000천원을 확보하여 추진코자 함. - '97. 1. 15 ~ 2. 28 실시설계 - '97. 3. 1 ~ 4. 30 용지보상 - '97. 3. 1 ~ 12. 31 공사완료 | |
| 예산집행 원칙위배 | <p>이후 예산집행 원칙을 준수토록 하겠음</p> | |
| 행정사무조사 조치 불이행 | <p>시공업체(동성건설(주))의 하자보수 미이행으로 시공업체는 부정당 업자로 제재 조치 중이며, 전문 건설공제조합에 예치중인 하자보증금을 이용 동절기 이후 공사를 시행코자 함.</p> <p>하자보증금 : 2,529,000원</p> <p>공사예정 : '97. 3 월중</p> |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 | 비 고 |
|-------------------------|---|-----|
| 공사 과다설계(대월면) | 해룡천 기성제 정비공사 설계금액 정산 완료 - 당 초 : 32,930 천원 - 변 경 : 31,117 천원 - 정산금액 : 1,813 천원 | |
| 공사대장 및 감독일지 미비치(읍면동 공통) | 공사대장 및 감독일지에 대하여는 기작성 비치 하였거나, 작성 비치완료 하였음. | |
| 어린이 놀이터 울타리 파손(창전동) | '97. 1. 30 한 보수 완료 계획 | |
| 경로당 신축건의 | 신하3리 경로당은 마을 자부담으로 개축 추진중이며, 신하 1리 및 신하 2리 경로당은 부지 및 예산확보후 추진 예정임. | |
| 축산단지 지원방안 강구 | 축산단지에 대한 운용자금이 지원 될 수 있도록 농림부에 건의 투록 경기도에 요청 → '97. 1. 8. '97년부터는 전업농 경영자금 지원 (호당 1,000 ~ 5,000 만원) | |
| 이천시 온천수 급수 조례 개정 | 이천시 온천수 급수조례 개정(안)을 '97년 3월중 의회 상정 계획임. | |
| 각종 보조금 지급후 사후 관리 철저요망 | 각종 보조사업 추진계획을 농민과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고, 보조금을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집행하며, 사업 완공 후에는 시설물 사후관리 및 영농지도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추진하여 사업성과 거양에 만전을 기하겠음. | |
| 도로 노폭 확보후 공사 요망 | '97년부터 각종 주민숙원사업중 도로부분에 대하여 최소한 폭 이 3 m 도로만 사업시행을 하겠음. | |

결의문 및 건의문 채택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 제정반대 결의문 및 건의안

■ 채택일시 : '97. 3. 11. 제11회 임시회

■ 주 문

환경부가 수질개선특별조치법 제정을 위하여 '97.2.18일 입법예고한 동법안에 대하여 재산권과 생존권보존 차원에서 이천시민의 뜻에 따라 반대 결의문과 건의문을 채택하였음.

■ 제안이유

그 동안 이천시 전역을 1982.10.28일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존권역으로 지정하여 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 조성사업, 관광지 조성사업, 4년제 대학, 연수시설 등의 입지제한을 해왔고, 1990.7.19일 부터는 환경정책기본법상 팔당호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51% 이상 지정하여 오·폐수에 대한 법적규제 및 입지제한이 있어 왔으나, 자연보존권역의 완화 및 불합리하게 지정된 특별대책지역 II 권역 축소조정건의는 배제한채 일방적으로 환경부가 동법안을 제정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 반대 결의문 주요내용

- 시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특별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 불합리하게 지정된 특별대책지역 II 권역을 전면 재조정하라.
- 자연보존권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라.
- 특별대책지역내의 환경기초시설 설치및 운영비용을 전액 국비에서 지원하라.

■ 반대 건의문 주요내용

- 수질정화구역 지정법안 삭제 및 상수원 간접영향구역 행위제한규정 추가 제정 불가.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구역별 특별기준 보다 강화된 기준설정조항 및 목표 수질관리등 규정 삭제.
-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운영비 국비로 전액지원 및 팔당호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II 권역 지정 불합리에 대한 재조정을 강력히 요구하며, 국회, 국무총리실, 환경부등에 반대 건의문을 전달하였다.

경기도 순환철도 건설에 대한 건의문

■ 채택일시 : '97. 3. 25. 제12회 임시회

■ 내 용

경기도내 교통체증의 해결과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균형 개발촉진을 위하여 건설 예정인 경기도 순환철도 노선 구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우리 이천시는 경기도 동남부 권역에 속해 있으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환경정책기본법상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경기도내 타시군에 비하여 행위 제한의 불균형에서 오는 경제적 낙후와 소외감이 시민정서에 매우 심각하게 자리잡고 있으며,

현 위치상 서울의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기존 설치되어 있는 대규모 공장에 종사하는 사원들의 대부분 서울 및 근처 대도시에서 자가용 승용차로 통근을 하고 있으므로 유동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교통 혼잡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이천시는 지역상으로 기존의 고속도로, 산업도로, 일반 국도등이 타시도와 연결되는 관문으로서 교통의 요충지가 되어 수도권으로 진입하기 위한 교통 도로로 경기도와 강원도, 경기도와 충청남북도를 이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 도로의 심한 병목현상을 가져오고 있으며,

향후 건설되는 서해 신공항을 기점으로 형성될 경기남부의 연구개발 및 첨단산업 벨트의 일부 지대로 포함될 것이 예상되어 산업화에 따른 인구와 물류수송을 위한 고속, 대량의 교통수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에 우리 이천시의회는 우리 이천시가 도비(지역개발기금)를 주 재원으로 하여 건설하고자 하는 경기도 순환철도의 노선에 "예비안"에서 조차 제외된 것에 대하여 경기도민으로서 정당하게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고 또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도정을 펼쳐 줄 것을 기대하면서 반드시 이천시를 경기도 순환철도 노선에 포함시켜 줄 것을 17만 이천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건의합니다.

기타 의정활동

■ 전국지방의원 세미나 참석

- 일 시 : '97. 7. 3 ~ 7. 5
- 장 소 : 경주

■ 이천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오찬간담회 개최

- 일 시 : '96. 10. 22
- 장 소 : 본수원갈비
- 초청자 : 각급 기관장, 국회의원, 도의원등 11명

■ 일반폐기물 소각장 설치 타당성 용역 보고회

- 일 시 : '97. 2. 10
- 장 소 : 이천시청 회의실

■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조치법 제정반대 결의문 및 건의문 채택

- 일 시 : '97. 3. 11. 제11회 임시회
- 장 소 : 이천시의회 본회의장

■ 일반폐기물 소각장 견학

- 일 시 : '97. 3. 14
- 장 소 : 고양시 쓰레기 소각장

■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조치법 제정반대 결의대회 참석

- 일 시 : '97. 3. 25
- 장 소 : 경기도 광주군 남면 분원리 교수부지

■ 경기도 순환철도 건설에 대한 건의문 채택

- 일 시 : '97. 3. 25. 제12회 임시회
- 장 소 : 이천시의회 본회의장

■ 도시가스기지 견학

- 일 시 : '97. 3. 27.
- 장 소 : 평택 도시가스 인수기지

■ 한강상수원 수질보전 및 개선대책을 위한 공청회 참석

- 일 시 : '97. 5. 15
- 장 소 : 세종문화회관

■ 학교폭력근절 결의대회 캠페인 참석

- 일 시 : '97. 5. 16
- 장 소 : 이천시민회관

■ 전국지방의원 세미나 참석

- 일 시 : '97. 7. 9 ~ 7. 12
- 장 소 : 제주도

제9회 정기회 시정질의 답변

- 질문의원 : 11명
- 답변공무원 : 유승우 이천시장
- 일 시 : '96. 12. 24.

강기필 의원

[질문 1]

쓰레기 처리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은 막연한 계획이 아니라 항구적인 사용이 가능한 대단위 소각장이나 매립장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에는 위치 및 부지선정등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계획이 강구되어 있는지?

[답변 1]

소고리 매립장 사용과 연계하여 추진 중인 쓰레기 소각장 설치는 이천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대한 소각 처리하고자 하루 60톤 규모로 도비와 시비를 포함한 90여억원의 투자 계획으로 '98년도 준공 목표를 두고, 현재 부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질문 2]

소고리 쓰레기 매립장은 향후 9년간 매립이 가능한지?

[답변 2]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총량은 192.5톤으로서 이중 매립 89.9톤, 소각 13.9톤, 재활용 46.9톤임을 감안 할 때 앞으로 쓰레기 처리량이 다소 증가하여도 충분히 9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문 3]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음식물의 퇴비화 또는 건조후 처리, 쓰레기 재활용으로 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분리수거등 정부시책에 대해 우리시에서는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3]

현재 총 쓰레기 발생량의 31%가 차지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내년 상반기부터 전용봉투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하여 대폭 줄여 나가겠으며, 현재 추진 중인 수거 체계가 확립되면 축산농가

나 유기질 비료업자와 연계하여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 문 4]

자원 재활용을 위한 분리수거 시책은 시에서 어떻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4]

수거된 재활용품을 자원재생공사에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화장지 등을 구매하여 주민들에게 보상하고 있으며, 재활용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수거율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해 규격봉투 미사용자에게는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반을 동원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 신 원 의원

[질 문 1]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안은?

[답 변 1]

인사법규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침체 분위기 해소 등 인력수급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정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전보를 가급적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질 문 2]

각 부서별 진행중인 각종 건축 및 토목 도로포장 사업을 부서별로는 계획업무만 감당케 하고 실질적인 사업은 전문적인 기술직 인력이 많은 담당 부서로 이관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답 변 2]

각 실과소의 사업비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각 실과소에서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감독은 사업에 관련 있는 전문직에게 공사감독관을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부서인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의 민원업무가 폭주하는 현실에서 모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앞으로 연구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 3]

인허가 및 모든업무가 과다하게 폭주하고 있는 농정과 농지관리계 인원을 증원할 수 있는지?

[답 변 3]

현행 과의 계별인원조정은 과장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는 상태로 농정과 인원증원에 대하여는 현 정원 범위내에서 상계 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97년 3월이후 조직진단을 통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 회 영 의 원

[질 문 1]

도시가스 배관공사 마무리 후 가스안전점검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답 변 1]

시에서는 시공에 대한 전체의 준수사항 여부를 감독하고, 대한도시가스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시공과 기술 전체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체계는 대한도시가스에서 배관안전 점검원이 배관길이 15km마다 1명씩 상주하면서 현장 안전점검에 임하고 있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공사 시공감리원 1명이 부실시공 방지에 철저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사 현장에서의 시공자의 의무사항인 자체점검 순찰강화 등의 준수 이행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점검을 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 문 2]

383지방도(국가지원 지방도 70호 도로)의 4차선 확포장 계획은?

[답 변 2]

사업의 주체는 지방도를 관리하고 있는 경기도이며, 국가지원 지방도의 추진 계획은 투자우선 순위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이를 위한 기본 및 타당성 조사는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본 도로의 우선 시행 건의서를 '96년 6월 13일부터 3회에 걸쳐 서면으로 건설교통부에 건의한바 있으며,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노선의 시가지 통과 부분에 대하여는 백사면 모전리에서 갈산동, 안흥동을 거쳐 율현동까지는 시가지를 우회시키는 방법으로 건교부에 건의하여 현재 확정단계입니다. 교육청 입구에서 증포교까지는 '97년말 완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용역 계약을 하였습니다.

[질 문 3]

복하천 하상정비와 제방복토 및 보강계획은?

[답 변 3]

복하천은 직할하천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사면 상용제 및 부발읍 무촌제 무제부 구간 1.945m에 대하여 14억 4천만원의 예산으로 '96년 3월 29일 착공하여 '96년 12월 31일 완공예정으로 서울지방국토 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96년 8월 14일자로 백사면 상용리에서 부발읍 무촌리 구간 3.5km에 대하여 하상정비와 제방축조 및 호안정비 요청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한바 '96년 8월 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건설교통부에 '97년도 예산에 반영을 건의하였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질 문 4]

무질서하게 서 있는 전주, 필요시 이전 대책 및 사용료 징수 용의는?

[답 변 4]

무질서한 전주에 대하여는 일제 조사를 통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 문제는 현재 도로법 제40조 및 시행령 24조 이천시 도로사용료 징수조례 3조에 의하여 본당 3백원씩 징수하고 있으며, 징수누락분이 있을 시에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징수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질 문 5]

백사면 현방-내촌-우곡-부발읍 신원-청암농장-용암휴게소까지 군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로 개설 할 계획은 있는지?

[답 변 5]

시도 3호선의 일부 구간으로 도로의 개설은 시도 중기계획에 의하여 지방 양여금을 지원 받아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도로가 부발읍과 백사면을 연결하는 기능 역할을 하므로 조기에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질 문 6]

건설과 토목계 업무가 폭주하므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 인원 증원 또는 계를 신설 할 용의는 있는지?

[답 변 6]

이천시는 인구 16만의 시로서 토목분야 업무의 증가 및 중요성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직진단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인원 증원이나 또는 필요한 계 설치문제를 신중히 검토 하겠습니다.

[질 문 7]

백사면 도립,경사,신대,조읍리 지역 버스운행 계획은 있는지?

[답 변 7]

현재 백사면 도립,신대,조읍1·2리를 포함하는 관내 오지부락에 대하여는 '97년도부터 연차

적으로 공영버스 지원 대상 지역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이전이라도 관할 운수업체인 경기여객 실무자와 현지를 답사하여 진입로 확보, 부락내 회차 공간 확보, 기타 주민이용 실태를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숙원사업이 조속히 이루어 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 병 진 의원

[질 문 1]

주민의 의견수렴 및 각종 설계의 과다 설계, 주요 부분 누락설계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설계심의 위원회를 공무원과 일반인중 전문가로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없다면 이러한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답 변 1]

앞으로 발주되는 읍면사업을 포함한 모든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진행중에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공사설계시 주민의견을 철저히 수렴하여 공사 발주토록 지도하겠습니다.

과다설계 및 주요부문 누락 설계에 대하여도 설계 심의회를 구성하는등 완벽한 설계가 되도록 해서, 감사시 지적되어 공사대금을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설계 잘못으로 시공업체가 손해보험등 공정거래상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앞으로 설계 업체에 대하여도 부실설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설계 참여를 제한하는등 조치를 하여 부실설계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질 문 2]

공사를 시행할 때는 공사준공시 당해 공사의 설계자, 설계심의자, 감독자, 준공일, 사업비 등을 명시하여 표식판을 만들어 현장에 설치하는 공사실명제를 실시할 용의는?

[답 변 2]

현재까지는 교량 공사 시에만 교명주에 공사개요와 감독, 준공 공무원을 표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각종 공사의 실명제 실시 문제를 적극 검토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박 선 기 의원

[질 문 1]

온천수 개발 및 사용료 징수 계획은?

[답 변 1]

관내에는 온천이 안흥지구, 가산지구, 신갈지구, 장천지구, 월포지구등 다섯 개소에 온천이 있습니다. 온천수 사용료의 징수계획은 온천법이 '96년 7월 1일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었으므로 이천시 온천수 급수 개정안을 현재 심의중에 있으며, 사용요금은 이천시 물가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 온천수 사용료 징수 및 온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현재 지정되어 개발 가능한 온천지구 중 안흥지구, 가산지구는 개발중에 있으며, 신갈지구는 준도시 지역중 운동 휴양지구로 결정되어 온천개발계획이 수립중에 있고, 장천, 월포지구는 준도시 지역 결정여부를 자문기관에 용역중에 있습니다.

[질 문 2]

상수도 확장공사와 맑은 물 공급 대책 및 채무상환에 대한 계획은?

[답 변 2]

먼저 기채상환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이천 상수도과 장호원상수도 확장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사업에 자체 자금으로만 조달하기는 매우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수돗물 공급은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공공사업이며, 시민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체를 차입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시에서는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 시켜 일부 총당하고 부족한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아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천상수도과 장호원상수도 급수구역을 제외한 지역은 간이상수도 129개소를 활용하여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점진적인 수질오염으로 금년도에도 장호원을 대서2리등 8개소가 폐쇄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수돗물 공급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이천상수도 2단계 준공과 병행해서 신둔, 백사, 호법, 마장, 모가, 대월면 지역에 효양산에서 정수한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설성, 울면과 장호원 나래, 이항, 와현, 풍계리 지역에도 장호원 상수도 배수지와는 별도의 배수지를 설치하여 공급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상수도 장기계획을 추진하고, '97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상수도 특별회계만으로는 사업비 확보가 곤란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 장기계획으로는 2005년에는 인구 3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상수도 기본계획을 '97년도말까지 수립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토록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존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 여부는 여주의 물이 통수되어서 기존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예비 상수도나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박 용 선 의원

[질 문 1]

수돗물을 공급받는 시민들의 총치예방과 구강보건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저비용 고부가가치의 획기적인 사업인 수돗물의 불소처리 계획은?

[답 변 1]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1ppm를 투입할 경우 충치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많은 양을 섭취할 경우 인체에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등 40여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는 불소투입을 법제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하기 위하여는 시설 설치비 2억 5천만원과 연간 약품비 2천여만원이 소요되고, 독극물 취급에 따른 전문기술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적으로 과천, 청주, 포항, 진해시등 4개 시에서만 도입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장단점을 좀더 검토해서 시행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질 문 2]

정주권 개발사업 면단위 순위결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답 변 2]

정주권 사업은 농촌의 면단위 중심생활권지역에 집중 투자를 유도하여 주택정비, 편의시설, 도로, 상·하수도 및 환경시설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우리시의 대상면은 읍지역과 동지역을 제외한 8개면 이며, 기본 계획이 수립된 면은 여섯개 면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된 면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면은 완료하고, 3개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미수립된 호법, 마장면은 조기에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 3]

농업박물관 건립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답 변 3]

오늘날 기계화 농업이 급속히 발전되어 옛 조상들의 농경생활 문화유산을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따라서 조상들의 농경생활 문화를 보존하고 후손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농업박물관 건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단계별로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농경유물을 수집하고 '97년이후 박물관 건립 및 유물을 전시할 계획으로 현재 168점을 수집하였고, 지난 10월에 이천시 4-H 경진대회시 관내 유물소장자의 협조로 600점을 전시해서 5,000여명의 학생이 관람하는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금회의 농업박물관 건립을 위해서는 몇 가지 충족 요건이 수반되어야 하겠습니다. 첫째, 전시물이 1,000점은 되어야 하고, 박물관 건립부지 및 건립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또한 유물을 전시하고 관리하는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농업박물관 건립은 관련 기관의 자문을 받아 충분한 연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 문 4]

각 농협에 설치된 RPC 도정공장외 비 RPC도정공장 지역인 신둔, 마장, 호법 지역의 미질향상 및 보존의 필수시설인 빗, 싸이로를 시에서 지원하여 설치할 수 있는지?

[답 변 4]

미곡종합처리장은 사업 목적상 벼의 수집단계에서부터 판매과정까지를 일괄 처리함으로써 농가의 편익 증대와 노동력 절감을 통해 쌀 수입개방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원된 사업으로서, 본 시에서는 농협 RPC 5개소와, 개인 RPC 1개소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설치하였고, '96미곡생산량이 51,937톤, 6개 RPC 도정 연간처리량이 46,200톤, 건조 9,300톤, 저장 6,400으로서 '95년도 감사원 감사시 과잉 투자시설로 지적된 사실이 있습니다. 금년도 2월 27일, 3월 9일 2회에 걸쳐서 건조, 저장 신규시설을 신청한 바 있으나, 경기도로부터 과잉 투자지역으로 불가 처리를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기존 RPC에 '97년도 사업으로 5개 RPC에 건조 4,000톤, 저장 3,000톤이 추가로 증설되며, 또한 빗 싸이로를 신규 설치할 경우 재정 형편상 시비로 하는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 문 5]

각종 문화재를 입체적으로 촬영하여 관리대장을 작성, 이후 문화재보수에 대비하는 방안은?

[답 변 5]

이천백송외 4개의 천연기념물, 건축물 및 산성지등을 입체 사진을 첨부해서 관리대장 및 필름 대장을 작성·보관하여 문화재 보수등에 사용토록 하겠으며, 영월암 마애여래 입상 외의 6개의 석조문화재도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 문화재등 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질 문 6]

영동고속도로의 호법, 마장지역 폐도부지 종합레저타운 시설 참여 계획은?

[답 변 6]

우리 시에서는 덕평 휴게시설을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즉 IC 설치를 협의중에 있고, 또한 마장 표교리에서부터 복합휴게단지 호법 단천리를 연결하는 도로 4.0Km를 확·포장하여 우리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업체들의 참여문제는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가능할 경우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 흥 택 의원

[질 문 1]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부진한 이유는?

[답 변 1]

먼저, 말씀하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의 불용액 발생에 대하여 설명 드리자면 본 자금은 세출 예산 3억 7천 895만 9천원을 차후년도의 안정적인 용자사업을 위한 적립금 2억 5천만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비율의 불용액이 생긴 것이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의 용자사업은 매년 1억원을 기준으로 용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의 용자를 위하여 분기당 2회에 걸쳐 유선방송등 지역신문에 홍보를 하고 있으나, '96년도에는 4가구 2천만원을 용자하는데, 그쳤습니다.

이와 같이 용자지원이 부진한 사유는 우선 용자에 있어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자에게 용자해야 한다는 점과 연대 보증인의 재정보증을 요하기 때문에 생계가 곤란한 영세민으로서는 신청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지원액이 5백만원에 불과하여 용자신청이 적은 것도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용자액을 늘이는 방법으로도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 문 2]

경영수익사업의 기금운영이 부진한 이유는?

[답 변 2]

경영수익 사업은 자체 또는 기채 재원을 투입하여 생산적인 사업을 추진하므로서 순수익을 창출하는 수익적 사업으로 지방자치제이후 재정 수요의 욕구는 급증하고 있으나, 지방 재정수입의 증가는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은 심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시의 당면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며, 또한 확실한 수익을 보장하는 사업이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고심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예산은 47억 8천 4백여만원으로 현재 45억을 고금리의 예금으로 적립하였으며, 아직까지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을 선정하지 못하여 예산을 사용치 못하였습니다. '97년에는 적정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지난 3/4분기 시정평가 자료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경영수익 사업의 추진 가능사업을 제출토록 한바 있습니다. 이중 추진가능한 사업으로 광고게재사업, 상하수도 공사설립, 내고장 농축산물 전용 판매장 설치운영, 이천특산물 통신판매등 7건의 우수시책 사업을 선정하고, 관련 부서별로 수익적인 차원에서 사업성 검토, 재정 수요등 세부 추진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현재 적립된 45억원에 대하여는 우선 행정타운 조성 부지 확보를 위한 투자계획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 문 3]

시립도서관 부지공사등 부실공사에 대한 대책은?

[답 변 3]

도서관 부지 조성공사의 준공 및 집행에 대해서는 도서관 부지내에 관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재시공이 불가피한 상태에서 준공처리를 하였다는 점과 업자의 전화번호가 허위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하여는 '95년 10월 10일 준공검사시에 준공검사관이 현지출장 확인을 해서 설계도면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 동절기에 온도변화로 인하여 땅이 가라앉자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업자의 전화번호가 허위라는 말씀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대인공사 이상열은 '96년 2월에 부도가 발생하여, 전화번호가 변경 및 해지된 경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발생된 배수관 변상 및 재시공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향후 보수계획은 하자 발생부분의 조립식 U형관 파손구간 120m는 부지내 도로포장 공사시 제거하여 시멘트 유형관으로 교체 부설할 계획이며, 뒤편 130m은 자연적으로 다져진 배수관 주위를 되메우기 및 잔디심기 작업을 기예치된 하자보증금 3백 9만 5천원으로 '97년 4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 문 4]

증률천 석축 부실공사 시공에 대한 대책은?

[답 변 4]

증률천, 소하천정비공사 돌붙임 시공시 부실시공에 대하여 50m 구간은 기초철거후 재시공 하였으며, 기 돌붙임 시공구간 202m은 설계변경 감액 처리하였으며, 시정요구 이후 공사 시공 구간은 설계도서대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죽당지구 경지정리 병행하천 사업과 관련하여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하천 호안기초 규격 미달시공을 지적받아 호안기초 시공상태의 확인, 조사한 바 총 7.503m중 946m가 규격미달 시공되어 시공회사로 하여금 재시공토록 지시하여 '95년 9월에 호안기초를 재시공,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질 문 5]

체납세 일소 방안은?

[답 변 5]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을 자치 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달려있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세수증대방안도 중요하지만 이미 부과 고지된 체납세를 징수하여 공평합리세 정을 구현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96년 11월 30일 현재 총체납액은 78.676건에 54억 2천 2백만원, 과년도 체납액은 48.191건에 28억 8천 4백만원입니다. 현년도 미수액은 30.485건에 25억 6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년도 미수액은 납기 미도래로 계속 수납되고 있으며, 과년도 체납액은 '95년도 결산이월액 77억 2천 2백만원중 '96년도 징수액이 48억 3천 8백만원으로 63%를 징수하였고, 경기도내 31개 시·군중 우리 이천시가 징수실적

3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882건에 9억 7천 2백만원, 자동차 18,923건에 12억 3천만원을 압류 조치하였으며, 형사고발 10건에 2천 9백만원, 예금계좌 압류 148건에 9천 7백만원, 전화가입권 압류 29건에 1천 2백만원을 채권 확보 조치하였습니다.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계속 물건 및 재산 상황을 조회중에 있고, '95년 11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인허가시 관허사업 제한실시로 '95년 11월 30일까지 255건에 1억 4천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또한 고액 체납자 300명에 대하여는 본청, 실·과소장 및 계장 1인당 3명씩을 배정 책임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장에게 체납세액 징수를 독려한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해서 현재 '96년 12월 20일 체납세액 징수 보고회를 부시장 주관하에 실시한 결과 체납세액의 5%내지 7%를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세의 효율적인 정리방안으로는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채권확보를 함과 성업 공사에 공매 의뢰를 하여 체납액을 정리하고,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97년부터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 거래자로 등록을 시켜서 금융대출과 신용카드사용을 제한토록 하며, 소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전화가입권 압류 및 예금계좌 압류등 모든 법적수단을 동원 체납세를 일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무 영 의원

[질 문 1]

도축세 세수증대 방안은?

[답 변 1]

현재 부발읍 아미리 660-1번지에 '82년 10월에 준공된 신영 도축장이 있습니다. 금년 11월 현재 소 4,646두, 돼지 374,078두를 도축하고 있으며, 돼지 도축물량은 이천시에 공급량을 비롯하여 대일 수출을 위하여 주식회사 청림식품, 주식회사 제일제당, 주식회사 선진육가공, 주식회사 도드람등에서 도축을 하고 있으며, 도축세는 11월말 현재 6억 8천 6백만원을 징수하였고 금년말까지는 7억원정도의 도축세 징수가 예상됩니다. 이중 '97년말 완공예정인 안성군 농공단지내 축산물 종합센터에 이전을 희망한 업체는 주식회사 선진육가공과, 주식회사 도드람은 2개 업체로 월평균 9,420두 정도 도축을 하고 있어 연간 11만3천두로 도축세액은 1억 7천 8백만원 정도가 납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축 두수는 점진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영도축장은 15년전 준공되어 시설의 노후화로 돼지고기의 대일수출 도축장으로는 규모나 위생상 어려움이 있으며, 도축장 주변이 현대전자를 비롯한 아파트, 주택, 상가등이 밀집되어 있어 악취등 공해문제로 어려움을 겪어 향후 5년내지 10년 후에는 도축시설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이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팔당수질보전대책 2권역등으로 인한 제약이 많아 신규 후보지 선정에도 어려움이 많습디만, 이천시민에게 원활한 육류 공급과 세수증대 확보 차원에서 도축장 시설 근대화와 도축장 이전 대상지를 적극

물색하여 유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단기대책으로 가칭 도축장 살리기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도축장 이전부지 선정문제, 기업양돈장의 신영도축장 이용 유도 방법등을 협의 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도축장의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하여 '97년도에 10억원을 투자해서 진공포장설비, 냉장고 설치 등의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전 예정지는 신영축산대표자와 계속 부지를 물색을 해서 사업장 후보지를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으며, 사업장 확보시는 사업비 126억원을 투자하여 도축시설 및 폐기물처리 설비를 갖춘 현대시설로 대일무역등 경영수익을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 문 2]

주민행정 서비스 세부추진계획은?

[답 변 2]

인근 시군과의 민원서류의 처리실적이 우리 시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농지전용허가의 경우 인근 용인시가 987건 접수에 576건을 처리하여 처리율이 58.4%입니다. 여주군은 856건 접수에 639건을 처리해서 처리율이 74.7%입니다. 광주군의 경우는 3천 119건 접수에 1천 808건을 처리하여 57.9%이나 우리시의 경우 758건 접수에 671건을 처리하여 처리율이 88.5%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장설립 및 등록도 용인시가 186건 접수에 135건을 처리하여 72.6%, 여주군은 63건 접수에 50건을 처리하여 94.3%, 광주군은 429건 접수에 313건을 처리하여 73%입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136건을 접수해서 135건을 전부 등록해서 1백%로 등록, 처리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처리건수를 주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개발과 보존의 조화가 잘 이루어짐도 중요하기 때문에 조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유독 이천시만이 까다로운 행정절차를 취하고 있고, 공무원들의 불친절 또는 부정적인 자세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는 그러한 면이 있는지는 몰라도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긍정적인 자세로 대민행정을 수행토록 교육을 통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 3]

북하천 시민공원 하자보수 계획은?

[답 변 3]

'96년 5월 23일 준공당시에는 씨드스프레이 다시 말해서 잔디씨 살포를 해서 시일이 경과되지 않아 잔디가 발아되지 않은 상태이고 잡초 또한 발아되지 않은 시기여서 설계대로 시공되었음을 인정하였기에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준공 45일정도 경과후에 우기로 잔디가 발아중이고 잡초 또한 자라는 시기로서 유관 판별이 가능하여 확인결과 일부 잔디조성구간에 잡초가 많이 발생한바 흙이 있음을 판단하고, '96년 7월 8일 하자보수를 지시하여 마사토의 재교체와 씨드스프레이를 재시공토록 해서 '96년 11월 13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공사감독일지 작성 비치관계는 기 의원님들께서 고수부지 공사현장 방문시 지적된 사항으로서 '96년 3월 1일 시승격과 동시에 직제변경에 의한 공사감독관의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현장에 미비치 하였으나, 즉시 비치토록 하였고, 앞으로는 각종 일지는 물론 공사에 있어서도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 문 4]

경기정리지구 하자보수 계획은?

[답 변 4]

'94년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은 '95년 6월 준공되었으며, 하자 보수기간은 '98년 6월 1일 까지 되어 있습니다. '96년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과 자체하자 점검을 실시하여 하자가 발생된 토공 수로등 토공에 하자가 발생되어 '96년 영농기 이전 하자보수 하였으나 '96년 여름 장마시 추가로 하자가 구조물과 접한 토공부분에 또 다시 발생되어서 시공회사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지시를 했고, 현재 하자보수중에 있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의 특수성과 동 절기에 시공하는 한시적인 공사로 연약한 지반등에서 하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 보수할 계획이며, 앞으로 실시하는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질 문 5]

공무원 연찬회를 행정사무감사시 실시하게 된 경위는?

[답 변 5]

연찬회 추진계획기간이 의회 정기회의 일정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감사기간중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사무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무감사에 대한 수감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는 하였으나, 약간 미비한 듯 합니다. 공직자 연찬회는 공무원의 사기양양과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것으로 주민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는 반듯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고객만족을 위해서는 사원만족이 앞서야 하는 것처럼 주민만족을 위해서는 공무원 만족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 없이 주민 서비스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공무원 연찬회 참석자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93% 이상이 직장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재충전의 기회인 연찬회를 '97년도에 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시어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하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1,100여 공직자의 업무배양 능력과 사기양양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사무감사기간에는 시에서 추진하는 행사와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 상 복 의 원

[질 문 1]

시청 민원인용 주차장 운영계획은?

[답 변 1]

현재 시청직원 소유차량은 214대이고, 청사내 주차장 면수는 총 164면이므로 차량을 소지한 전 직원이 자가용 출퇴근 할 경우,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큰 불편을 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주정차가 용이한 청사정면 52면을 민원인 전용 주차장으로 지정을 했고,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해 왔습니다. 직원차량은 5부제를 실시하였고, 다수의 인원이 참석하는 민방위 교육이나 입찰은 현재 민원인의 불편 해소차원에서 시민회관에서 실시하고,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주차면수로는 매년 증가하는 차량을 감당하기 어려움으로 산업도로 건너편에 있는 종리동 113-2번지의 2필지에 3,018㎡를 확보해서 주차장 108면을 설치하기 위하여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97년 4월중에 완공을 해서 시청직원의 주차시설로 활용할 계획에 있으므로 청사내에는 민원인만 주차하도록 하면 앞으로 주차난은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내 주차 유료화는 직원 전용 주차장 설치후에도 계속 주차난이 심각하면 주민여론을 수렴을 해서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질 문 2]

마장면 패키지 마을 조성 추진계획은?

[답 변 2]

마장면 패키지 마을 조성사업은 금년 9월 18일 4개월의 공기로 1차 공사를 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추진 공정은 부지성토공사 95%, 우수관공사 60%, 오수관 공사 65%, 옹벽설치공사 100%의 진척에 있습니다.

주택개량은 29동이 착공되어 25동은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일부 주민들은 동절기 부실공사를 우려해서 가건물에 계속 거주할 계획으로 내부마감공사를 늦추고 있으며, 골조공사가 완료된 주택중 8동은 내부마감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감공사 완료시 가건물 임주민과 협의를 해서 우선 입주를 원하는 가구는 이미 주택에 2가구씩 임시 거주하도록 건물 거주시 16가구에 대하여 동절기 생활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오수처리시설은 당초 시유지인 축산분뇨처리장 약 105평과 인접 토지 약 300평을 활용코자 마을에서 인접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락을 얻어 농지전용신고 되었으나,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락 철회로 시설공사를 시행치 못함으로써 마을에서 인근 지역의 부지를 재선정하여 추진코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을의 주민들이 재선정한 부지는 농지전용이 불가함으로써 마을 이장, 사업추진 위원장인 업체 관계자 및 공무원등 7명이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기존 축산분뇨처리장 위치에 기계식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재선정한 부지는 향후 마을에서 회관 부지 및 어린이 놀이터, 공동창고 부지등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기계식 오수처리시설 설치시 소유면적은 약 60평이며, 기존 축산분뇨 처리장 면적은 약 105평으로서 부지면적은 충분한 상태입니다. 토취장은 당초

마을에서 사용승락을 득한 토지 범위가 넓을뿐 아니라 토취량 또한 막대하여 토치 면적을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이 되었던 토취장은 민원을 해결코자 토지 소유자 이병식씨, 에스콰이어 대표를 방문해서 두 번이나 방문을 해서 토취 부분과 토취량 복구방안 등을 상세히 설명했고, 원만히 협의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부실공사가 발생치 않도록 '96년 12월 16일자로 기반시설 공사를 중지하였으며, 동절기 이후인 내년 3월경부터 재착수하여 6월까지 기반시설 공사 및 간이오수처리장, 주택개량 등을 완료하겠으며, 사업추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종 료 의원

[질 문 1]

도예산업관광단지 조성과 '99년도 세계도예전시회 개최를 위한 준비상황, 소요재원확보 방안, 개최후 운영대책은?

[답 변 1]

일부에서 시장 임기중 치적 세우기가 아니냐, 예산투자가치가 있느냐등 부정적 여론, 세계도예제 축제를 마친 후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예산업 관광단지를 조성코자 하는 배경부터 간략히 설명드리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계획은 경기도가 구상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도자기 공장이 많은 이천시, 광주군, 여주군등 3개 지역을 연계하여 지방문화를 상품화한 세계도예 관광단지를 육성하는 계획입니다. 경기도에서는 그 동안 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연구,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중심지 개최시기, 운영계획등 구체적인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관심사인 개발 중심지는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우리 시가 가장 유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직 도예산업관광단지 세부 개발계획이 확정 발표되지 않은 상황으로 상세하게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준비상황에 대하여는 도예산업 관광단지 중심지 위치를 위해서는 경기도가 연구, 용역 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객관적 자료 협조, 여론조사, 그리고 중심지의 당위성등 인근 군과 비교 우위를 접하기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또한 단지개발에 필요한 부지는 시군 자치단체에서 부담 원칙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신둔면 수광리 냇고개 부근에 46,627평을 '97년 매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심지 확정 발표후 도와 긴밀한 협조하에 추진위원회 구성등 각종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소요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우리시에서는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국도비 및 민자 등을 적극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임기중 치적 세우기가 아니냐, 도예업자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예산투자 가치가 있느냐 하는 일부 여론에 대해서는 시정 연설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관광산업은 효자 산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굴뚝없는 공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고장은 관광산업이 빈약합니다. 그러므로 타고장에 크게 앞서 있는 도예산업을 관광 상품화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이천의 쌀과 과수, 축산물등 특산물을 판매하는등 전후방 연관 효과를 도모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도에 단지조성은 우리 시의 재정형편이 넉넉하면 독자적인 개발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나 경기도가 앞장서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좋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될 것이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모든 공직자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본인이 치적으로 내세우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정부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임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일부 잘못된 여론에 대하여 이러한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계도예제 개최후 도예단지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도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뭐라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시설의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예단지, 도예학습장등 관광시설로 활용하여 시설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 2]

수도사업자 원인자 부담금 및 분담금 협의 실시계획은?

[답 변 2]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공사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수도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경우에는 '96년도에 신축 또는 준공 예정인 안흥동의 일성·주공아파트와 증포동의 부악, 대우, 대원, 선경등 6개 아파트에 대하여 4억 4천 3백만원을 징수해서 현재 배수관로 공사를 제공하여 시공중에 있습니다. '97년도 신축예정인 증포동의 대영주택, 한송아이다, 신세계 푸드시스템, 갈산동의 신한, 우성아파트, 송정동의 풍산, 계성 아파트, 부발읍 사동리 서전타운, 이화아파트등 9개의 대형 건물에 대하여는 금년 11월 25일 원인자 부담금 원칙에 의하여 협의한바가 있습니다. 8억 7백만원을 부담하기로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신하리 지역에는 사동리 입구까지 배수관로가 부설되어 있어 인입관로를 설치하면 상수도 공급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삼익과 진우, 신한, 청구아파트는 당초 아파트 사업 허가시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허가 하였으므로 사업자가 원할 경우 입주 예정일에 맞추어 상수도 공급은 가능합니다.

향후에도 아파트 또는 대형건물 건축시 용수공급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상수도 배수관로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질 문 3]

관용 승용차량의 감차할 용의가 있는지?

[답 변 3]

현재 이천시에서 사용중인 전체 승용차량은 10대입니다. 이중에서 시장, 부시장용과 의회 의 전용 차량등 3대를 제외한 7대의 차량은 본청에서 상급기관 점검 및 업무용으로 1대를 활용하고 있고, 그 외에 6대의 차량은 의회사무국, 보건소, 지도소, 장호원을, 부발읍, 창전동에서 각각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감축을 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후 내구년한 이 경과될 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 중 철 의원

[질 문 1]

이천중앙시장 재건축 문제는?

[답 변 1]

이천중앙시장은 노후불량 건축물로서 도시미관 저해와 화재시 대형사고가 예상되고 있어서 우리시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현대건설, 한화건설, 대우건설, 성원건설등 국내 굴지의 건설 업체와 조합측간의 사업성을 협의한 결과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이 사업성이 없음을 이유로 포기하였습니다. 다만, 미원건설에서는 재건축 사업자의 의지가 있어서 지난 11월에 재건축조합 임원들과 회의를 실시하여 재건축시 각종별 업종 선정과 배분되는 층수 변경시 면적 비율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빠른 시일내에 재건축 조합측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기로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미원 건설측에서 사업계획서 제출후 재건축 조합원에게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여 동의를 득한후, 계약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도 이번기회에 재건축이 안될시는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조합측에게 계속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사업자에게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조속히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질 문 2]

이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미집행 사유 및 부진 이유는?

[답 변 2]

국도비 보조사업 대부분이 예산배정이 3월중에 이루어지고, 설계를하여 계약단계를 거쳐 용지보상이 이루어져야 공사를 착공하게 되는데, 용지보상 협의에 어려움이 많아서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미집행사업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을 해서 현재 설계중이나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진사업에 대하여 공정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조기에 마무리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 문 3]

각종 행사에 대한 단일화에 대하여 이천시의 의지는?

[답 변 3]

지방자치 출범이후 세계화·지방화시대에 홀로서기의 입장에서 우리 지역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일련의 과정속에서 예년에 비해 각종 행사는 수적으로나 양적으로 많이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시승격 기념행사, 지방자치단체 출범 1주년 기념행사, 시민의 날 행사, 도자기 축제, 쌀축제등 크고 작은 행사가 시 주관 또는 유관기관 공동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이천시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행사가 과도한 행사경비와 소모성 행사라는 일부의 비판이 있는 것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발전적이고 주민에게 도움을 주는 행사로 운영되도록 시에서 추진하는 행사는 물론 유관기관, 사회단체 행사도 시민화합과 단결차원에서 중복성 행사와 연례행사는 통합, 운영되도록 적극 유도해서 내실있는 행사로 운영되도록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사진으로 본 의정 활동



이천시의회 본회의장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시의회가 되기 위해
의정 보고회 및 간담회 개최로 지역여론수렴



각 읍·면·동 순회 의정보고회 개최('96. 7. 9~7. 29)



각 읍·면·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및 부녀회장 초청 간담회 개최('97. 5. 29)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우리 의원들은 발로 뛰고 있습니다



상수원수질개선 특별조치법 제정반대 결의문 및 건의문 채택('97. 3. 11)



상수원수질개선 특별조치법 제정반대 결의대회(광주군) 참석('97. 3. 25)



고양시 일반폐기물 쓰레기 소각장 견학('97. 3. 14)



이천시취수장(여주군 여주읍) 방문('97. 7. 4)

행정사무 조사 및 감사시 현장확인을 통한 의정활동 전개



이천시 시립도서관 신축현장 확인('97. 6. 25)



이천하수처리시설공사 현장 확인('97. 6. 28)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 전경



행정사무감사 전경('96. 12. 27)



행정사무감사(이무영 부의장)



행정사무감사(강신원 의회 운영위원장)



행정사무감사(박용선 내무위원장)



행정사무감사(이종철 산업위원장)



행정사무감사(강기필 의원)



행정사무감사(국희영 의원)



행정사무감사(박병진 의원)



행정사무감사(박선기 의원)



행정사무감사(심흥택 의원)



행정사무감사(윤희동 의원)



행정사무감사(이상복 의원)



행정사무감사(이종률 의원)

지방 의회가 하는 일

- 지방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
-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의결기관

1.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의결권

- 지방자치 법규인 조례의 제정 및 개정 · 폐지
-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 · 운용
-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 공공시설의 설치 · 관리 및 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2. 선거권

- 의회조직 내부의 각종 선거에 대한 권한으로서 의장 ·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거권과 도 교육위원 후보 선출권

3.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지 확인, 서류의 제출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 · 증언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행정사무감사권 : 의회가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를 감사할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정기회 회기중 7일 이내로 시행함
 - 행정사무조사권 : 의회가 자치단체 사무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

4. 동의권

- 지방자치 단체장이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
 - 지방채 발행 (지방자치 단체가 빚을지는 경우)
 - 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 자치단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 기타 법에 정해진 사항

5. 승인권

- 집행기관이 처리한 사항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승낙을 부여하는 권한
(예)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승인안등

6. 청원 수리권

- 주민들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행정기관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해 이를 호소해 오면, 이를 심사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7. 보고 및 서류의 수리권

- 지방자치 단체장이나 그밖의 집행기관의 처리하는 사무에 대하여 보고 및 서류제출을 청구할 수 있다.
 - 선결 처분 사항에 대한보고
 - 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 상황의 보고
 - 청원처리상황의 보고

8. 외부에 의견을 제시하는 의견 제시권

- 지방자치의 행정과 지역의 이익이나 주민의 희망 사항을 종합하여 대외적(정부, 국회, 기타 기관 단체)으로 건의 또는 결의라는 형식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권한
- 지방자치 단체장은 시정을 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것도 있다.
(예)도시계획의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나 구역변경을 할때.

9. 자율권

- 의회가 집행기관으로부터 아무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를 규율하는 권한으로 의회 규칙의 제정, 의회의 개회와 폐회 및 회기의 결정, 질서의 유지, 징계, 의원의 자격 심사등

알리는 말씀

■ 임시회 및 정기회 방청 안내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은 시민의 관심 속에서만이 성숙할 수 있습니다.
이천시의회는 임시회 정기회는 시민 모두가 방청할 수 있습니다.

○ 방청시기

- 정기회 : 매년 11월 25일부터 35일간 입니다.
- 임시회 : 회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열리게 되며 개최 5일전에 공고됩니다.

○ 방청방법

방청을 원하시는 분이나 단체는 의회사무국에서 방청권을 교부 받은 후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청권은 한정된 방청석 또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으므로, 미리 의회사무국에 방문 또는 전화(30-050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시의회 안내

- 의 장 실 : 33-9990, 30-0501
- 사 무 국 장 실 : 32-0239, 30-0504
- 운영전문위원실 : 30-0407
- 내무전문위원실 : 30-0408
- 산업전문위원실 : 30-0409
- 의 정 계 : 33-9991, 30-0509
- 의 사 계 : 30-0508
- F A X : 33-9992

의 정 소 식

발행일 : 1997년 8월 일

발행처 : 이 천 시 의 회

주 소 :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187-1번지
(467-030)